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1 굴착공사 계획 신고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회합 · 공동표시

표시 · 단독표시

4 굴착공사 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도시가스, 고압가스, LPG배관망공급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굴착공사 신고 방법

전 화 : 1644-0001 (전국 동일)

인터넷 : www.eocs.or.kr

모바일 : m.eocs.or.kr

A P 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www.eocs.or.kr
m.eocs.or.kr



굴착공사신고 편의와 도시가스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법령 위반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이상인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모든 굴착공사는 전화 **1644-0001** 로 반드시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1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02 신고 내용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 제72조의 4

신고방법

 인터넷 www.eocs.or.kr	 전화 1644-0001	 모바일웹 m.eocs.or.kr	 APP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
--	--	---	---

03 위치 확인방법 결정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해당 굴착현장 위치 및 매설된 가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EOCSS시스템에 입력합니다.

04 배관 표시 방법

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회합)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LPG배관망공급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입회하에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는 흰색 페인트, 매설된 가스 배관 직상부에는 **황색(도시가스, LPG)** 및 **청색(고압가스)**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된 배관의 위치표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한 경우(표시)

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공사 위치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황색(도시가스, LPG)** 및 **청색(고압가스)** 표시를 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05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스배관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 기준 요약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 도시가스법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 손상방지기준을 따르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터파기(파일박기), 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 가스배관주위를 굴착할 때에는 가스배관 예상부위의 좌우 1m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해야 한다.
- 가스배관주위에 다른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관과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이격거리 부족 시 보호판시공 등 가스배관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배관주위 굴착할 경우, 가스배관 부속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박스)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 가스배관이 노출된 경우 배관코팅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코팅손상 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가스전문시공자에 의해 보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는 배관주위에 모래 채우기, 보호판,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가스배관 주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 후 시행해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 28 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